

■ 노인(수급자)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(추가)

입소 前 단계	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	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(운영주체, 위치, 환경, 서비스내용 등)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.
		■ 시설은 카페, 블로그, 메신저, 기관 홈페이지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하며,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		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며,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.
		■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요청시 정보제공에 의해 제3자(동료 생활노인 등)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임해야 한다.
		■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선택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.
입소 계약 단계	시설 입, 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이용, 제반시설, 활동참여, 권리와 의무 등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	■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(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용,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)를 제공해야 한다.
		■ 노인의 권리,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, 입소절차, 운영규칙 및 규정,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.
		■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공유되어야 한다.
	노인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며,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권리	■ 입소 계약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, 존중되어야 한다.;
		■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며,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.
생활 단계	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	■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편의에 의해 자의적이고, 선별적으로 입소노인을 선택해서는 안된다. 다만,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도 노인 및 보호자에게 타 시설 소개 등 노인이 적합한 서비스를 공백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		■ 입소 계약시 당사자(시설, 노인, 보호자등)들은 노인이 시설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정보(노인의 성격, 취향등)를 나누며, 계약서는 서명 후 당사자들이 각 한 부씩 보관한다.
		■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,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		■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, 강요나 강압이 아니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.
		■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고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,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.
		■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 또는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.
		■ 개인적 생활스타일(헤어스타일, 의복등)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.
		■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.
		■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생활 단계	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	■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, 미끄럼방지, 문턱제거,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.
		■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, 온도, 습도, 소음, 채광, 조명, 청소 등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.
		■목욕, 의복,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.
		■소방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,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장치(비상벨등)를 필요한 장소(생활실, 화장실, 욕실등)의 사용 가능한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.
	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	■개인정보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,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.
		■입소상담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된다.
		■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, 돌봄,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,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. 다만,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		■입소 노인의 개인적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.
	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	■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(유무선전화기 등) 사용,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.
		■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		■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노인의 권리가 침해도리 우려가 있거나,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		■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에 대한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, 노인복지법 제5조의 3에 의한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,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		■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,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.
		■노인의 권리변화,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,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,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재를 존중해야 한다.
	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	■생활노인, 가족, 시설장,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, 막말,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		■성별, 종교, 신분, 경제력, 장애 등 신체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.
		■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,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등의 학대 해위르 해서는 안되며,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.
		■노인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.
		■서비스의 제공시 안전을 이유로 신체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.

생활 단계	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	■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.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(절박성),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(비대체성)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(일시성)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된다.
		■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상태,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,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.
	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생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	■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.
		■ 종사자의 편익에 따라 식사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, 연하 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방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.
		■ 노인의 건강상태,질병과 증상,치료 및 투약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영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		■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체근육재활 및 밀착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		■ 기저귀 케어가 불필요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,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		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, 건강상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 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.
		■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의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된다.
		■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,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.
		■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,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치망을 개발하고,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		■ 종사자는 직무수행사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.
		■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.
	시설 내,외부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	■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에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.
		■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, 여가,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		■ 시설 외부의 건강,사회,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,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.
		■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.
		■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,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.
		■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,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		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,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,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.
		■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,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.
		■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.

생활 단계	개인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 할 권리	■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,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함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
		■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태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된다.
		■다만,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.
		■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된다.
	이성교제,성생활,기 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	■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,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.
		■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드려야 한다.
		■흡연,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, 시설에 생활하는 타인의 구더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생활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
	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	■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,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.
		■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(건의함,고충처리위원회 등)를 마련해야 한다.
		■노인과 보호자의 불만,불평,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액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		■노인과 보호자가 불만,불평,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.
퇴소 단계	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 후 거주지(원가정복귀, 전원,입원등)를 선택할 권리	■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,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.
		■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 되어야 하며,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,강요,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.
		■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.
		■ 퇴소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		■보호자의 방임, 생활노인의 개인적 성향, 종사자와의 불화 등 부당한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.
		■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알아북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